

정 관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제정 1976. 12. 7	개정 1990. 5. 9	개정 2000. 12. 7	개정 2013. 3. 14
개정 1977. 8. 20	개정 1990. 7. 27	개정 2001. 3. 8	개정 2014. 1. 1
개정 1978. 9. 6	개정 1991. 10. 9	개정 2001. 9. 1	개정 2014. 4. 17
개정 1980. 3. 1	개정 1992. 6. 16	개정 2002. 7. 5	개정 2015. 6. 25
개정 1981. 8. 20	개정 1993. 9. 13	개정 2002. 9. 14	개정 2016. 4. 21
개정 1982. 1. 14	개정 1994. 1. 6	개정 2002. 10. 8	개정 2016. 9. 7
개정 1983. 3. 24	개정 1994. 3. 1	개정 2003. 2. 28	개정 2016. 12. 15
개정 1983. 11. 1	개정 1995. 1. 25	개정 2003. 8. 13	개정 2018. 6. 21
개정 1984. 3. 16	개정 1995. 3. 28	개정 2004. 1. 31	개정 2019. 4. 24
개정 1984. 5. 16	개정 1995. 6. 21	개정 2004. 10. 1	개정 2020. 2. 19
개정 1984. 12. 10	개정 1995. 12. 1	개정 2005. 3. 8	개정 2021. 11. 3
개정 1985. 3. 1	개정 1996. 1. 26	개정 2005. 10. 17	
개정 1986. 3. 1	개정 1996. 11. 21	개정 2006. 4. 11	
개정 1986. 11. 25	개정 1997. 8. 13	개정 2006. 11. 14	
개정 1987. 2. 12	개정 1998. 4. 9	개정 2007. 9. 1	
개정 1987. 5. 6	개정 1998. 11. 13	개정 2008. 1. 1	
개정 1987. 9. 15	개정 1998. 12. 31	개정 2008. 2. 19	
개정 1988. 6. 7	개정 1999. 5. 31	개정 2008. 5. 13	
개정 1989. 1. 18	개정 1999. 11. 16	개정 2009. 1. 8	
개정 1989. 6. 22	개정 2000. 2. 14	개정 2010. 3. 1	
개정 1989. 9. 5	개정 2000. 3. 1	개정 2012. 1. 1	
개정 1990. 4. 3	개정 2000. 3. 20	개정 2012. 6. 1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지도자적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 과학연구와 산·학 협동연구를 통하여 인류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중심의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 3조 (설치학교)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 경영한다.

제 4조 (주소)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에 둔다.

제 5조 (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산

제 6조 (자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조 (경비와 유지방법)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조 (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대학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대학에 속하는 회계는 총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0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제15조 (상근임원) ① 법인에 상근하는 임원은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3인 이내에서 관장업무를 위촉하여 둘 수 있다.

②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만료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임원이 자진 사임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 출연회사인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1인) 및 대학 총장을 이사로 한다.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

하여야 하며, 그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개방이사의 추천 등에 대한 절차를 준용한다.

⑥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18조 (이사의 자격) 법인의 이사는 대학의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여야 한다.

제19조 (개방이사의 정수) 법인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이사를 말한다)의 수는 3인으로 한다.

제20조 (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대상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립학교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개방이사의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③ 개방이사의 선임절차, 방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 시 따로 정한다.

제20조의2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10일 이내 그 구성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관할청으로부터 개방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은 날로 그 활동이 종료된다.

⑦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 시 추천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3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5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장을 겸할 수 없다.

- ②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학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6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총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교원의 임용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6. 법인이 설치한 대학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총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9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 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대학평의위원회

제32조 (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3조 (평의위원회의 구성)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인
2. 직원 2인
3. 학생 2인

4.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 ② 평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교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직접 위촉한다.

제35조 (평의회 의장 등) ① 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사고 시 이를 대행한다.

제36조 (평의원의 임기)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교원 2년
2. 직원 2년
3. 학생 1년
4.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외 인사 2년

제37조 (평의원의 기능)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8조 (운영규정) 평의회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총장이 정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39조 (수익사업의 종류)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국내·외 연구 및 개발업
3. 국내·외 유가증권 투자사업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40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9조 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금세기빌딩을 경영한다.

제41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9조 제1호의 수익사업체는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에 둔다.

제42조 (관리인) 제39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 5 장 해 산

제43조 (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관할청의 해산인가를 받거나 관할청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사립학교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관할청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44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45조 (청산인) 법인을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제46조 (임용) 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총장 이외의 대학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해임 및 파면은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만, 타 대학 정년보장교원을 신규임용할 경우에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정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학부)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교육·연구실적 및 봉사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④ 대학의 부총장, 대학원장(전문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제외)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고, 기타 교원의 보직은 총장이 보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 처장, 포항가속기 연구소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은 그 임용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47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재외교육기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중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창업으로 휴직을 신청하여 총장이 승인한 경우
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제48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47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7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6의2. 제47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4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7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7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7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1. 제47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2. 제47조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49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7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50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게는 그 휴직기간 중 월봉액의 4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월봉액의 5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월봉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 ② 제4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게는 그 기간 중 월봉액의 3할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4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 규정에 준하여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월봉액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월봉액의 5할을 지급한다.
-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⑦ (삭제)

제52조 (보수) ① 교원의 보수는 연봉제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② 교원 보수의 총액 및 평균인상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개인별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53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

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4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55조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65세가 되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

②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대학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70세 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총장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2 (명예퇴직) 교원의 경우 필요시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56조 (연구연수) 대학의 필요에 의한 연구연수(파견 및 연구년제 등을 포함한다) 시에는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7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동의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부총장, 대학원장을 보직제청 하고자 할 때의 그 동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근무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련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9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9인의 교원으로 구성하되 하부에 학과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60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1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2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 제63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제64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 제6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66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7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8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69조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 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0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1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2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2조의2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임용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제72조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 (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4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7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제76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 무 직 원

제77조 (자격) ①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될 수 없다.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일반직원의 당연퇴직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을 준용한다.

제78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79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직무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이사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81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 (명예퇴직) 직원의 경우 필요 시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83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4조 (법인사무조직)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교

제85조 (총장 등) ① 대학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③ 대학에는 부총장을 둔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전항에 의한 분장업무를 통할한다.

⑥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총장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교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6조 (대학원장) ① 대학의 각 대학원에는 대학원장을 둔다.

②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7조 (학장 및 주임교수) 각 학부 또는 학과에는 학사운영 전반을 통괄하기 위하여 학부에는 학장, 학과에는 주임교수를 둔다.

제88조 (대학원의 하부조직) 각 대학원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9조 (포항가속기연구소) ① 대학에는 기초과학연구 및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범국가적 시설인 방사광가속기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포항가속기연구소를 둔다.

② 포항가속기연구소에는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포항가속기연구소에는 부소장을 둔다.

⑤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여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포항가속기연구소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0조 (하부조직) ① 대학에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를 둔다.

- ② 처에는 처장을 둔다.
- ③ 각 처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1조 (산학협력단) ①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

-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하부에 처를 두고 처에는 처장을 둔다.
- ③ 각 처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2조 (연구소 및 부속시설) ① 대학에 필요한 연구소 및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소 및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둔다.
- ③ 연구소 및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④ 연구소 및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3조 (삭제)

제 3 절 정 원

제94조 (정원) 법인 및 대학에 두는 일반직원의 총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95조 (공고)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내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9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7조 (설립당초의 임원)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박 태 준	1927. 9.29	4 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83-8
이 사	고 준 식	1921. 3.26	4 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13-4
"	이 관 희	1926. 2.16	2 년	경북 영일군 연일면 대잠동 654-1
"	황 경 로	1930. 7.11	4 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등선동 4가 319-13
"	박 영 석	1927. 9.18	2 년	경북 포항시 학잠동 20-1
"	계 병 도	1925.10.10	4 년	경북 영일군 연일면 대잠동 668-8
"	이 종 열	1927. 8.10	2 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0-18
감 사	이 정 도	1925. 4.16	2 년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전포동 543-1
"	김 명 환	1926. 4. 2	1 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2-30

부 칙

이 정관은 1976년 12월 7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②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1991년 10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보되, 그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대학의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학교의 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⑤ (대학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의 부학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타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⑥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⑦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② (학교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명된 대학교육 기관의 장은 이 정관에 의한 임명권자가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임명권자가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대학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각종 보직에 임명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직 중 임기가 있는 경우 그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⑤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및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정관에 의한 임명권자가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법인 제철학원 소속으로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11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8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4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5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하며, 제4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3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12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3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7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9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10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8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로 임명되는 총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1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200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대학의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시행일 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이 정관에 의한 임명권자가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③ (대학교원의 임면권에 대한 경과조치) 정관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교원의 임면권 중 정년보장임용을 제외한 모든 교원의 임면권을 정관변경일 현재 총장의 재임기간(2007년 8월 31일 까지) 동안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임면한 결과를 임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대학의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정관에 따라 임용된 교원은 이 정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 이후 임용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201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 교원의 임면에 대한 경과조치)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21일 이후 임용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이전부터 재직 중인 교원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 교원의 임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정관에 따라 임용된 교원은 이 정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 인 일 반 직 원 정 원

총 계	27
일반직	23
기술직	4

(별표 2)

대 학 일 반 직 원 정 원

총 계	511
일반직	172
기술직	227
별정직	112